



즉시 배포용: 2017 년 9 월 1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EQUIFAX 해킹 사태 후 뉴욕 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대처하는 새로운 조치 발표

적용될 규제로 신용 평가 기관은 뉴욕의 첫 사이버 보안 규제에 따라야 할 것

해당 규제는 사상 처음으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신용 평가 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줄 것

금융서비스부 감독관, 신용 평가 기관이 뉴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 및 소비자와 거래할 권한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어

적용될 규제는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약 1 억 5000 만 명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금융서비스부에 처음으로 신용 평가 기관이 뉴욕에 등록해야 하며 뉴욕주의 첫 사이버보안 규정에 따라야 하는 새 규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이 불공정, 사기, 탈취 행위 등 특정 금지된 관행을 어길 시 금융서비스부 감독관은 연간 보고 의무를 통해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이 뉴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 및 소비자와 거래할 권한을 거부 또는 잠재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용 기록은 사실상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 주민들이 느슨한 보안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용 평가 기관 감독으로 이처럼 빨리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 정보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거나 기타 범죄 행위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Equifax 의 해킹 사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본 조치로 뉴욕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국가 전체가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될 규제에 따라 뉴욕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은 2018년 2월 1일 또는 그 전에 금융서비스부에 등록하고, 그 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일 년에 한 번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금융 서비스, 은행업무, 보험법, 규칙 등에 따른 의무가 있는 기관 담당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부 감독관 Maria T. Vull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quifax 해킹 사태로 뉴욕의 첫 사이버보안 규제 같은 강한 국가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필수 조치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부가 뉴욕 시장과 소비자, 민감한 정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 감독관이 볼 때 신청 기관 또는 기관의 임직원, 담당자, 관리자 등이 신뢰할 수 없고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으로써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관련이 없을 시, 해당 기관이 등록 취소 또는 보류할 원인을 제공하거나 최소 기준에 미달할 시 해당 기관의 등록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될 규제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마다 금융서비스부에서 소비자 평가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관의 운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호도하려 직간접적으로 계획, 계획, 책략을 이용함.
-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사기, 탈취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함, 뉴욕주에 있는 소비자용 신용 기록 유지, 평가, 수집과 관련된 정보를 사칭 또는 누락함.
-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 1036 조를 위반하여 불공정, 사기, 남용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함.
- 뉴욕주에 있는 소비자와 관련된 기록에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함.
- 뉴욕주에 있는 소비자가 사인하여 서면 허가를 가진 소비자 대리인과 소통하기를 거부함(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에서 해당 대리인의 소비자 대리 실제 권한을 검증할 절차를 합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
- 정부 기관이 제출한 정보나 보고 또는 감독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에서 수행한 수사와 관련된 중요 사실을 허위 진술 또는 누락함.

또한 모든 신용 평가 기관은 2018년 4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서비스부 사이버보안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사이버보안 규제에 금융서비스부 규제를 받는 은행, 보험 회사, 기타 금융 서비스 기관은 소비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다음을 포함하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i)서면 정책, 이사회 또는 고위 관리자가 승인한 정책, (ii)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iii)뉴욕 금융 서비스 산업의 안전 및 안정을 위한 규제 및 계획 준비.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